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자동차수색

[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. 12. 15. 2022고합25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김혜리(기소), 남연진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이명률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3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, 자동차수색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